

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333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

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
-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9조(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
- 「하남시 안전도시 조례」 제8조(위탁운영)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7조(의회 동의 등)

○ 추진 필요성

- 하남시 안전체험장은 영·유아 및 청소년 연령대에 맞는 재난·안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 교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필요

3. 위탁사무 내용

- 안전체험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안전체험장 홍보 및 예약접수
- 안전체험장 운영 인력 채용 및 관리
- 안전체험장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, 관리 등

4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하남시 안전체험장
- 위치·규모 : 하남시 조정대로 111, 청소년수련관 내 2·3층 약 500㎡
- 주요시설 : 오리엔테이션장, 심폐소생술체험장, 교통안전체험장, 지하철안전체험장, 생활지진안전체험장, 화재대피체험장, 화재진압체험장

- 운영인력 : 총 7명(시설장 1명, 안전교사 5명, 기간제근로자 1명)
- 관련사진
 - 위치도



- 주요시설

		
오리엔테이션룸	심폐소생술체험장	교통안전체험장
		
지하철안전체험장	지진안전체험장	화재대피체험장
		
화재진압체험장	1관 출입구(3층)	2관 출입구(2층)

5. 위탁기간 : 3년(2027. 1. 1. ~ 2029. 12. 31.)

6. 수탁자 선정방식

- 현 ‘행복함께나누는재단’ 과 재계약
-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적격자 심의

7. 소요예산 (연간)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금 액	산출내역
계	410,000천원	
노무비	338,946천원	▶ 직원 7명 인건비 (비상근1, 정규직5, 대체인력1)
사업비	71,054천원	▶ 체험장비 유지보수, 임차비용, 소모품 구입 등

※ 여성가족부 「청소년수련시설 관리·운영 지침」 임금 권고안을 준용하여, 매년도 지급기준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노무비 상승(3~5%) 예상

8. 성과평가 결과

- 평가점수 : 96점

2026년 하남시 안전체험장 성과평가 점수표			
○ 시 설 명 : 하남시 안전체험장			
○ 대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6. 30.			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 배점	평가 점수
	합계	100	96
1. 기관 운영 및 관리	1-1 시설의 미션과 비전	5	5
	1-2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및 적합성	5	5
2. 프로그램 운영	2-1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	5	5
	2-2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노력	5	5
	2-3 안전교육자료 개발	5	4
3. 프로그램 이용 및 만족도	3-1 프로그램 이용도	5	5
	3-2 만족도 설문 조사	10	10
	3-3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	5	5
4. 인사 및 조직 관리	4-1 직원 확보의 수준	4	4
	4-2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율	4	4
	4-3 직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노력도 및 법정 의무교육 실시 여부	4	4
	4-4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	4	4
	4-5 이직율, 고용 승계·유지	4	2
5. 시설기준 및 안전	5-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	4	4
	5-2 이용자안전관리	4	4
	5-3 프로그램 및 시설 안전관리	4	3.2
	5-4 안전보험 가입	4	4
	5-5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여부	3	3
	5-6 시설 내 소독 및 방역 실시	3	3
	5-7 시설 개선 노력	3	3
6. 대외협력 및 홍보	6-1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정도	5	5
	6-2 홍보 활동의 노력 수준	5	4.8
확 인 자 안전기획팀장 행정 6급 박재홍			
평 가 자 주 무 관 방재안전7급 박호영			

○ 평가내용

- 평가 우수사항

- 전반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 우수함
- 지역연계 프로그램개발 및 ‘26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’ 승인으로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외협력 분야 추진 결과 매우 우수함

- 평가 미흡사항

- 안전교육자료 개발 지표의 체험교구 확보 현황 중 안전모, 구명조끼 등 일부 체험교구 추가 확보가 필요함
- 안전체험장 근로자 이직률 71.3%, 평균 근속 기간 7.3개월로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
-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, 실질적인 홍보 효과 제고 필요

9.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

- 교육의 전문성 확보 필요 : 하남시 안전체험장은 청소년수련관 내 위치하여 영·유아 및 청소년 재난·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안전교육 시설로 방문객 연령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
- 축적된 경험 활용 필요 : 현 위탁기관 안전교사의 경우 경력 관리 등 사유로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나, 시설장과 팀장은 2020년부터 지속 근무중으로서 그동안의 안전교육 활동과 소방서 및 관내 민간단체 등과의 대외 활동경험이 축적되어 향후 시설운영에 필요한 발전방향 이해도가 높아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보다는 현 재단과 재계약을 통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10. 기타사항

- 관계법령 발췌서 1부
- 민간위탁 성과평가보고서 1부(별첨)

관련 법령 및 조례

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6조의 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- 2의2.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·지원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
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·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

제9조(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2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3.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
4.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3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

제8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안전관련 개선사업
2.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
3. 안전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
4. 안전관련 조사 및 연구
5.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4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제7조(의회 동의 등)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10.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